

제269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008년 4월 24일 (목)

심 사 보 고 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2차 변경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 4. 24.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8년 4월 11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 4. 21)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수정)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김완경)

1. 제안이유

가. 도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주
의료원의 재활치료와 호스피스 등 통합 진료가 요구
됨에도 치료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환자 수용에 한계가
있어 특수병동을 증축하고

- 나. 보은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대추공원과 게이트볼장 편입예정 부지를 매각하고자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취득 -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
- 증축규모 : 3,066㎡
 - 특수병동 지상 4층 2,850㎡ 지하1층 216㎡)
- ※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신축 중)에 증축
- 사업기간 : 2008. 4 ~ 2010. 11(3년간)
- 사 업 비 : 5,960백만원(국비 2,980)
- 연차별 투자계획
 - 2008년도 : 3,714백만원(국비 1,857.0)
 - 2009년도 : 1,123백만원(국비 561.5)
 - 2010년도 : 1,123백만원(국비 561.5)

나. 재산의 처분 - 공공시설 예정부지 매각

- 위 치 :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229-17 등 2개 지역
- 매각규모 : 27필지 7,526㎡
 - 장안면 개안리 229-17외 25필지 6,231㎡(대추공원 부지)
 - 내북면 동산리 165-2 1,295㎡(게이트볼장 부지)
- 매각시기 : 2008. 4 ~
- 재산가액 : 80백만원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1.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

가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은 재활치료·호스피스·말기암 환자 통증완화에 필요한 병동을 증축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현재 신축 중에 있는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2,676㎡·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에 3,066㎡(지상 4층·지하 1층)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가 되나

다. 증축 사업비 5,960백만원은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로 구성되어 있는 바 도비 2,980백만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2. 공공시설 예정부지 매각

- 가. 공공시설부지 매각은 보은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추공원과 게이트볼장 편입 예정부지의 도유지를 보은군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총 27필지 7,526㎡이며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8천만원임.
- 나. 검토한 바 재산매각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대체재산 취득 등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VI.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가. 세부 계획별로 질의·답변을 한 후 심사의결
- 나. 심사결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는 검토 후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함.

-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의 건은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4월 28일 예정되어 있고, 이 심사 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 재정지원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 본 건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보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번 심사에서 삭제함.

- 공공시설 편입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 게이트볼장 조성 예정지인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65-2번지, 면적 1,295㎡·재산가액 1,955만 4,500원은 현지확인 결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매각 대상에서 삭제하고
 - 대추공원 조정 예정지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229-17번지 등 총 26필지·면적 6,231㎡·재산가액 6,123만 4,090원의 재산매각에 대하여 동의함.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9
----------	-----

제출연월일 : 2008년 4월 2일
제출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제안사유

- 보은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대추공원 편입예정 부지를 매각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재산의 처분 : 공공시설 예정부지 매각

- 위치 :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229-17 등 2개 지역
- 매각규모 : 26필지 6,231㎡
- 장안면 개안리 229-17외 25필지 6,231㎡(대추공원 부지)
- 매각시기 : 2008. 4 ~
- 재산가액 : 61백만원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공공시설 편입예정지 처분재산 내역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 집행부 제출안 》

(단위 : m²)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 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건물	1 건	3,066.00	5,960,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 흥덕 사직 554-6	3,066.00	5,960,000	2008~ 2010	청주의료원 특수 병동 확충	증 축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 위원회 수정안 》

(단위 : m²)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건물	-	-	-	-	-	-	
	기타							
1	토지							
	건물	-	-	-	-	-	-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공시설 편입예정지 처분재산 내역

《 집행부 제출안 》

(단위:m²,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산가액	처분사유
	계	27필지		7,526.0	80,788,590	
1	보은 장안 개안	229-17	답	865.0	8,433,750	대추공원 조성 편입 예정부지
2	보은 장안 개안	229-18	답	1,418.0	13,825,500	
3	보은 장안 개안	229-24	답	60.0	592,800	
4	보은 장안 개안	229-25	답	166.0	1,640,080	
5	보은 장안 개안	229-26	답	236.0	2,331,680	
6	보은 장안 개안	229-27	답	257.0	2,539,160	
7	보은 장안 개안	229-28	답	250.0	2,470,000	
8	보은 장안 개안	229-29	답	236.0	2,331,680	
9	보은 장안 개안	229-30	답	240.0	2,371,200	
10	보은 장안 개안	229-31	답	202.0	1,995,760	
11	보은 장안 개안	229-32	답	215.0	2,142,200	
12	보은 장안 개안	229-33	답	162.0	1,600,560	
13	보은 장안 개안	229-34	답	320.0	3,161,600	
14	보은 장안 개안	229-35	답	148.0	1,462,240	
15	보은 장안 개안	229-36	답	152.0	1,501,760	
16	보은 장안 개안	229-37	답	141.0	1,393,080	
17	보은 장안 개안	229-38	답	143.0	1,412,840	
18	보은 장안 개안	229-39	답	152.0	1,501,760	
19	보은 장안 개안	229-41	답	179.0	1,768,520	
20	보은 장안 개안	229-42	답	183.0	1,808,040	
21	보은 장안 개안	229-43	답	148.0	1,412,840	
22	보은 장안 개안	229-44	답	130.0	1,284,400	
23	보은 장안 개안	229-45	답	96.0	948,480	
24	보은 장안 개안	229-46	답	33.0	326,040	
25	보은 장안 개안	229-47	답	86.0	849,680	
26	보은 장안 개안	229-48	답	13.0	128,440	
27	보은 내북 동산	165-2	답	1,295.0	19,554,500	내북 게이트볼장 편입 예정부지

공공시설 편입예정지 처분재산 내역

《 위원회 수정안 》

(단위:m²,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산가액	처분사유
	계	26필지		6,231.0	61,234,090	
1	보은 장안 개안	229-17	답	865.0	8,433,750	대추공원 조성 편입 예정부지
2	보은 장안 개안	229-18	답	1,418.0	13,825,500	
3	보은 장안 개안	229-24	답	60.0	592,800	
4	보은 장안 개안	229-25	답	166.0	1,640,080	
5	보은 장안 개안	229-26	답	236.0	2,331,680	
6	보은 장안 개안	229-27	답	257.0	2,539,160	
7	보은 장안 개안	229-28	답	250.0	2,470,000	
8	보은 장안 개안	229-29	답	236.0	2,331,680	
9	보은 장안 개안	229-30	답	240.0	2,371,200	
10	보은 장안 개안	229-31	답	202.0	1,995,760	
11	보은 장안 개안	229-32	답	215.0	2,142,200	
12	보은 장안 개안	229-33	답	162.0	1,600,560	
13	보은 장안 개안	229-34	답	320.0	3,161,600	
14	보은 장안 개안	229-35	답	148.0	1,462,240	
15	보은 장안 개안	229-36	답	152.0	1,501,760	
16	보은 장안 개안	229-37	답	141.0	1,393,080	
17	보은 장안 개안	229-38	답	143.0	1,412,840	
18	보은 장안 개안	229-39	답	152.0	1,501,760	
19	보은 장안 개안	229-41	답	179.0	1,768,520	
20	보은 장안 개안	229-42	답	183.0	1,808,040	
21	보은 장안 개안	229-43	답	148.0	1,412,840	
22	보은 장안 개안	229-44	답	130.0	1,284,400	
23	보은 장안 개안	229-45	답	96.0	948,480	
24	보은 장안 개안	229-46	답	33.0	326,040	
25	보은 장안 개안	229-47	답	86.0	849,680	
26	보은 장안 개안	229-48	답	13.0	128,440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6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0 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